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68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박균택 · 김주영 · 박상혁
박지원 · 한민수 · 양부남
서영교 · 김동아 · 장경태
박 정 · 이진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살인사건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함께 따라온 친구를 포함하여 살해 및 중상을 입힌 범죄로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대상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 추가 등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인지하더라도 보호관찰소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 간 정보공유에 공백이 있음.

이에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를 “부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10.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그 이행 여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를 것

⑤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준수 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

가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공 및 통보의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 사항) ① · ② (생략)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 9. (생략) <u><신설></u>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 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를 것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0. (생략)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	④ ----- ----- -----

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
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부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

⑤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⑥ 제5항

제37조의2(보호관찰 대상자의 신
상정보 제공 등) ① 보호관찰
소의 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
호관찰 대상자가 제29조제2항

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
· 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
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
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보호
관찰 대상자 지도·감독에 활
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
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
찰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거
나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
한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임
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제공 및 통보의 절차와 관

	<u>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